

일련번호	2	감사자		
수감부서 (처리할 부서)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
구로구청 (가부서)	종류	인원	조치방법	금액(천원)
	주의요구	2		

제 목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조정

【 지적내용 】

구로구청(이하 '발주자'라 한다)은 '17. 2. 8. A사(이하 '수급인'이라 한다)와 도급계약(준공 '18.11.30., 금액 4,326백만 원)을 체결하여 '구로구 ○○○○○○○○ 신축공사'(이하 '이 건 건설공사'라 한다)를 시행하였으며,

'17. 4.11. B사와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(완수 '18.12.13., 금액 71백만 원)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.

한편 수급인은 '17. 7.10. 이 건 건설공사 중 "토공사"(준공 '18.11.21., 금액 741백만 원)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0개사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.

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)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,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.

한편 「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63호, '17.2.4.)」 제2장 공사 감리업무 2.5.7.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·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, 설계변경 도면,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·확인하여야 하며, 「건축사법」 제20조(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)에서도 건축사는 「건축법」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, 건축물의 안전·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공사관리관은 「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·조치요령('16. 9. 국토교통부)」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6조(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)에 따라 공사감리자가

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, 하수급인에게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그런데,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'17.10.16.~'18.10.25.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(356백만 원)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(증 20백만 원)을 조정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

그 결과 수급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그리고 발주자(공사관리관)는 설계변경사항을 하수급인에게 미통보하였다.

【 조치할 사항 】

구로구청장은

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미조정하여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제1항, 제3항을 위반한 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(시정조치), 제25조의3(과징금) 및 제30조 제1항(벌칙)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「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」 제2장 공사감리업무 2.5.7. 설계변경 검토를 소홀히 하여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'주의'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조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교육하시기 바랍니다.(주의요구)

※ 신분상 조치

- 설계변경사항 미통보 등 업무 소홀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